제422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경위처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회경위처 설치>
▣ 권칠승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7747호, 제2207748호)

2025. 2.

국 회 운 영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Ⅰ. 제안경위·제안이유·주요내용 ····· 1

1. 국회경위처법안 ····· 1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3

Ⅱ. 총괄적 검토 ····· 5

1. 제·개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 ····· 5
2. 현행 국회의 경비·경호 체계 ····· 8
3. 해외 의회의 경비 체계 ····· 12
4. 소결 ····· 15

Ⅲ. 조문별 검토 ····· 19

1. 목적 및 지위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 19
2. 국회경위처의 직무(안 제3조 및 제9조) ····· 20
3. 국회경위처의 구성(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 22
4. 소속공무원의 사법경찰권 부여(안 제10조) ····· 27
5. 소속공무원의 권한 남용 금지 등(안 제11조) ····· 30
6. 소속공무원의 무기 사용(안 제12조) ····· 31
7. 벌칙(안 제13조) ····· 35
8. 위임규정(안 제14조) ····· 37
9. 부칙 ····· 38

Ⅰ. 제안경위·제안이유·주요내용

1. 국회경위처법안

가.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권칠승・조계원・민병덕・소병훈・박용갑・임호선
김태선・서미화・송옥주・김준형・전진숙 의원(11인)

2) 제 안 일 : 2025. 1. 23.

3) 회 부 일 : 2025. 1. 24.

※ 의안번호 : 7747

나. 제안이유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경찰・계엄군은 국회를 폐쇄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진・출입을 통제하고, 계엄군은 헌법상 권리인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에 관한 본회의 표결을 방해하려 한 사건이 발생하였음.

현행 제도에 따르면 국회를 경비하는 국회경비대는 서울경찰청 소속으로 국회의장이 아닌 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데, 계엄과정에서 국회경비대에 의해 국회의원, 국회 직원의 진・출입이 저지되는 등 국회 자체 경호・경비 인원의 부재에 따른 위험성이 명백히 드러나게 되었음.

이에 국회경위처를 신설함으로써 서울경찰청 소속인 국회경비대를 국회 자체의 경호·경비 인원으로 재편하고 국회의 경호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가. 국회경위처를 국회의장 소속으로 신설함(안 제2조).

나. 국회경위처는 국회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음을 명시하고, 그 소관 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다. 국회경위처의 장의 지위, 임명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국회경위처의 조직 및 소속 공무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라. 국회경위처 소속 공무원의 사법경찰권, 무기 사용 및 직권 남용 금지 의무 등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라.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칠승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권칠승・조계원・민병덕・소병훈・박용갑・임호선
김태선・서미화・송옥주・김준형 의원(10인)

2) 제 안 일 : 2025. 1. 23.

3) 회 부 일 : 2025. 1. 24.

※ 의안번호 : 774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경찰・계엄군은 국회를 폐쇄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진・출입을 통제하고, 계엄군은 헌법상 권리인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에 관한 본회의 표결을 방해하려 한 사건이 발생하였음.

현행 제도에 따르면 국회를 경비하는 국회경비대는 서울경찰청 소속으로 국회의장이 아닌 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데, 계엄과정에서 국회경비대에 의해 국회의원, 국회 직원의 진・출입이 저지되는 등 국회 자체 경호・경비 인원의 부재에 따른 위험성이 명백히 드러나게 되었음.

이에 국회경위처를 신설함으로써 서울경찰청 소속인 국회경비대를 국회 자체의 경호・경비 인원으로 재편하고 국회의 경호와 관련된 법

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2조의5 신설 등).

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칠승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경위처법안」(의안번호 제77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Ⅱ. 총괄적 검토

1. 제·개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찰이 국회를 폐쇄하여 국회의원 및 직원의 출입을 봉쇄하고 계엄군 출입을 허용하는 사태가 발생함. 이는 계엄 시 정부와 법원에 대해서만 특별한 조치가 가능하고, 계엄해제요구권을 보유한 국회는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한 「대한민국헌법」 및 「계엄법」[1]에 반하는 것임.

동 사태가 발생했던 원인으로 국회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국회경비대가 서울특별시경찰청 소속으로서 이들에 대한 최종 지휘권이 국회의장이 아닌 경찰청장에게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2]

이에 제·개정안은 입법부의 지위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독자적인 경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회경위처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은 국회경위처의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본칙 총 14개조 및 부칙 총 2개조로 구성되어 있음.

첫째, 제정안은 국회 및 국회 중요인물에 대한 경호를 수행하는 국회경위처의 조직·직무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법률의 목적으로 함.

---

1) 「대한민국헌법」 제77조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계엄법」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集會)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7조(계엄사령관의 관장사항) ①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2) 다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폐쇄 시 국회경비대에 대한 지휘체계는 경찰청장-서울특별시경찰청장 순으로 이루어졌고, 당시 국회경비대는 국회의장에 대한 보고나 봉쇄 해제 지시에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됨.

둘째, 국회경위처를 국회의장의 소속 하에 두고,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국회 경비, 국회의장·부의장 및 국회를 방문하는 국내외 중요인물의 경호, 테러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등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셋째, 국회경위처에 처장 1인을 두고 보조기관은 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하되, 소속 공무원의 정원, 실·국·과 및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넷째, 국회경위처 소속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별사법경찰권 및 무기 사용 등이 가능함.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2조의5(국회경위처) ① 국회 중요 인물의 경호, 국회의 회의(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다)의 경호 및 국회청사의 방호·경비를 위하여 국회경위처를 둔다. ② 국회경위처에 처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 처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회경위처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회운영위원회 <신 설>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 1. ---------- 사. 국회경위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표-2] 제정안의 조문 체계

본 칙 (14개 조문)	
제1조(목적)	**제8조**(조직)
제2조(지위)	**제9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3조(직무)	**제10조**(경위처 소속 공무원의 사법경찰권)
제4조(처장)	**제11조**(권한 남용 금지 등)
제5조(국회경위처장추천위원회)	**제12조**(무기의 휴대 및 사용)
제6조(임명동의 시 첨부서류 등)	**제13조**(벌칙)
제7조(공무원의 임용)	**제14조**(위임규정)
부 칙 (2개 조문)	
제1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회사무처법 직무 중 '청사 경비' 삭제	

2. 현행 국회의 경비·경호 체계

가) 법적 근거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국회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내부경찰권(內部警察權)[3]과 의원가택권(議院家宅權)[4]을 보유하며, 이는 구체적으로 국회의장의 경호권과 질서유지권 등의 형식으로 발현됨.[5] 다만, 제정안의 발의 목적과 관련된 것은 국회의 경호·경비 제도이므로, 아래에서는 경호권과 의원가택권을 중심으로 설명함.

경호권은 「국회법」 제143조 및 제144조[6] 에 근거하여 회기 중 국회 안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의장이 행사할 수 있는 내부경찰권으로, 이를 위해 국회에 경위(경호기획관실 소속 일반직 국회공무원)를 두고 필요 시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경찰공무원 파견을 요구할 수 있음.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아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파견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업무를 수행함.

한편, 국회의장은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의원가택권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청사관리에 따른 부수적 권리로서 경호권과 달리 폐회 중에도 행사할 수 있음. 경호권과 달리 급박한 위해를 제거하기 위한 의원가택권 행사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 없이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음.[7]

---

3) 국회 안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원·방청인 등 원내에 있는 모든 자에 대해 일정한 사항을 명령하거나 실력으로써 직접 강제하는 권한

4) 회기에 관계없이 국회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이 국회 내에 침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회 내 들어오는 모든 자를 국회의 질서에 따르게 할 수 있는 권한

5) 국회사무처, 「국회법해설」. 2024.

6) 「국회법」 제143조(의장의 경호권) 의장은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한다.
제144조(경위와 경찰관) ①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警衛)를 둔다.
② 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경호업무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

나) 현행 국회 경비·경호체계[8)]

현재 국회 경비체계는 3선으로 운영됨. **1선**인 원내 회의장 질서유지 및 의전 경호, 방청 및 참관 안전관리 업무는 국회 경위가, **2선**인 국회 경내 주요 건물에 대한 방호 및 경비, 청사출입 안내, 주차관리 업무는 국회 방호가, **3선**인 국회의사당 경내 및 외곽경비, 출입문 경비, 국회의장 수행 경호 및 공관 경비, 국회 방문 주요 인사 경호 및 대테러 예방 및 안전 업무는 국회경비대(서울특별시경찰청)가 수행함.

[그림-1] 현행 국회 경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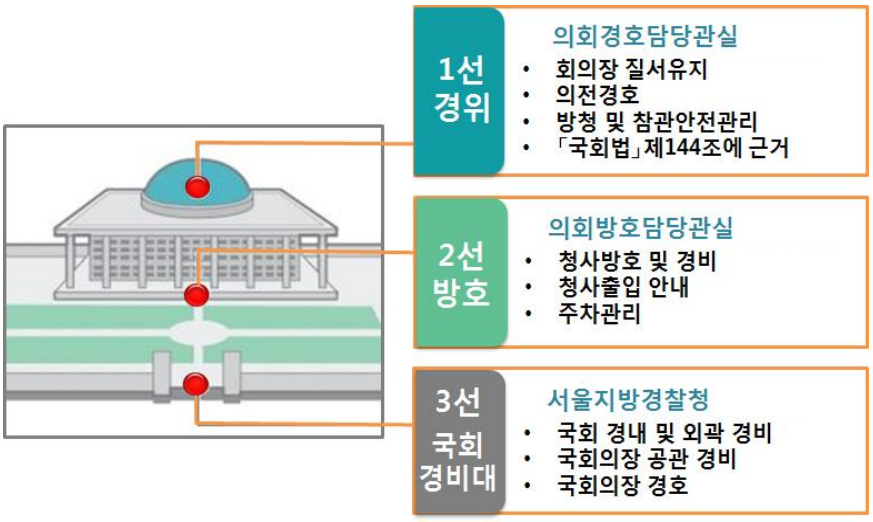

자료: 국회사무처

국회 경위와 방호는 「국회법」[9)] 및 「국회사무처 직제」[10)] 등에 근거한 조직으로서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총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

7) 국회사무처, 「국회법해설」. 2024.
8) 전진영, 「국회 경호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슈와논점』 제2304호, 국회입법조사처, 2024., 이상훈, 「국회 경호·경비제도 개선 방안 고찰」, NARS 간담회 발제문, 2024., 국회사무처 제출 자료를 종합하여 작성함.
9) 「국회법」 제144조(경위와 경찰관) ①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警衛)를 둔다.
10) 「국회사무처 직제」 제5조의2(경호기획관) ② 경호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입법차장을 보좌한다.
1. 국회의 경호 및 방호
2. 국회의 방청
3. 국회의사당 참관의 지원 및 안전검색
4. 출입증의 발급·관리
5. 테러(사이버테러는 제외한다)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일반직 국회공무원(경위직·방호직)과 공무직근로자로 구성되어 있음.

반면에, 국회경비대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11]에 근거한 경찰공무원 조직으로 행정응원의 형식으로 국회에 배치되고 있고,[12]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및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의 지휘를 받으나 주요 사항은 국회와 협의하여 수행 중임. 참고로, 1951. 3. 22. 최초로 국회경비대가 창설된 이후 현재까지 국회의장 산하에서 운영된 적은 없었으며, 2025. 2. 기준 국회경비대 현원은 123명임.

[표-3] 국회 경호 관련 조직 현황

(2025. 2. 1. 기준)

구분	국회사무처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방호	국회경비대
조직	의회경호담당관실 소속	의회방호담당관실 소속	대장(총경) 1명, 행정과, 경비제대(4개), 의장경호대
인원	경위직 69명	방호직 124명 공무직 40명	123명
주요 업무	-경호·방호 기본계획 수립 -본회의·위원회 경호 -외곽경비업무 협의·조정 -테러 예방·대응 등	-국회 청사 시설의 방호 및 경비 -국회의사당 경내 질서유지 -주차 관리 등	-국회 경내 및 외곽 경비 -국회의장 경호 및 공관 경비

자료: 국회사무처

11)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서울특별시경찰청에 두는 담당관 및 직할대) ② 서울특별시경찰청(이하 이 절에서 "서울경찰청"이라 한다) 공공안전차장 밑에 101경비단·기동단·22경찰경호대·국회경비대·김포공항경찰대·경찰특공대 및 202경비대를 둔다.

12) 일각에서 국회경비대를 국회 경비를 위해 "파견"된 경찰력으로 많이 설명하고 있으나, 경찰력의 국회 배치는 「국회법」 또는 「국가공무원법」 상 파견이 아닌 「행정절차법」 상 행정응원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행정절차법」 제8조(행정응원) ①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행정청에 행정응원(行政應援)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령등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인원·장비의 부족 등 사실상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3. 다른 행정청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4. 다른 행정청이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통계 등 행정자료가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다른 행정청의 응원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보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경우

현행 국회 경비체계는 국회의장·국회사무총장과 서울경찰청장으로 지휘권자가 나뉘어, 경호·경비의 기본원칙인 경호지휘단일성[13] 및 경호체계통일성[14]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러한 이유로 국회는 기습적인 시위나 질서위반행위가 자주 발생하여 신속성·긴급성이 요구되고 필요한 경우 지휘자의 빠른 결단과 일사분란한 명령하달, 경호·경비요원의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일원화된 지휘체계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15]

13) 성공적인 경호조직에 대한 불가피한 전제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경호요원은 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지휘는 단일해야 하고 이를 분할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함. 지휘의 단일성은 경호업무가 신속한 결단과 지휘명령 등과 같은 긴급성을 요한다는 측면에서 요구됨.

14) 구조의 정점으로부터 말단에 이르는 무수한 기준을 통하여 상하계급 간에 일정한 관계가 이루어져 책임과 업무의 분담이 이루어지고, 명령과 복종의 지위와 역할의 체계가 통일되어야 함을 뜻함.

15) 박창희, 「국회 경호·질서유지 관련 법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5.

3. 해외 의회의 경비 체계[16]

미국 연방의회의 경우 경비 및 보안 업무는 의회경찰(U. S. Capitaol Police: USCP)이 담당하고 있음. 의회경찰은 특별구역 경찰로서 연방의회가 직접 선발하며, 수행 업무는 연방의원과 의회 직원의 안전, 연방의회 지도부와 연방의회를 방문하는 국가원수·고위급 인사의 경호임. 현재 의회경찰은 약 2,000명 규모로 조직되어 있으며, 그 외에 운영 및 행정직을 맡고 있는 350명의 일반인이 의회경찰대에 소속되어 있음. 의회경찰은 범죄행위에 대한 예방·감시·조사 활동을 할 수 있고,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등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음.

독일 연방의회는 사무처 산하 보안부서에 의회경찰(Bundespolizei)을 두고 있고, 의회경찰은 연방경찰이나 주(州)경찰의 파견을 받아 운영해 왔으나 2013년부터 연방경찰의 협조 하에 자체적으로 일부 보안인력을 채용하고 있음. 의회경찰은 일반 경찰처럼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죄행위를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의장의 명시적인 승인 하에서만 체포·수사를 할 수 있음. 2019년 기준 169명(사설 보안담당관 제외) 규모임.

프랑스 국민의회는 의회사무처 산하조직인 보안안전실(Reception, Security and Safety Division), 공화국 수비대[17] 의회 파견대, 소방 파견대, 경찰 등 복수의 조직이 경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의회 파견대 지휘관은 의장에게 보고의무가 있음. 경찰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의회방문객의 범죄이력 조회, 의사업무 방해 행위 감독 등의 업무

16) 전진영, 「국회 경호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슈와논점』 제2304호, 국회입법조사처, 2024.,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회답 및 국회사무처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여 작성함.
17) 프랑스 국가 헌병대(Gendarmerie Nationale) 산하 조직으로, 파리에 있는 대통령궁(엘리제궁)과 국회의사당, 총리관저 등 주요 시설의 경호경비를 담당함.

를 수행하고 있는데, 국회의사당 건물 외부 경호는 파리경찰국(내무부)에서 담당하고 있음.

영국 의회는 2016년 1월 의회경호국(Parliamentary Security Department: PSD)을 창설하였고, 의회 경내의 모든 안전 관련 전략·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의회경호국장은 하원의장과 상원의장의 직속 지휘를 받으며 의회 사무총장의 관리 하에 있음. 한편, 의회 외곽은 특별임무 협약을 맺고 있는 특수경찰부대인 의회 및 외교 보호사령부(Parliamentary & Diplomatic Protection Command: PaDP)에서 담당하며, 현재 약 500인의 경호직이 근무하고 있음. 이들 경찰 인력은 의회경호국장의 지휘를 받음.

일본은 우리나라 국회와 마찬가지로 경위가 의회 내부 경호·경비를 담당하고 경찰관(동경 경시청 기동대 담당)은 의회 외부 경비를 담당하고 있으며, 의장이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의사당 내부의 경찰을 담당할 수도 있음. 경위가 소속된 경무부는 중의원과 참의원 사무처 아래 조직되어 국회 경호업무(원내 경비, 정부 요인 및 외국 국빈 경호)를 수행하며, 경무부장은 사무총장과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음.

마지막으로, **캐나다** 의회의 경우에는 2014년 의회경호국(Parliamentary Protective Service: PPS)을 창설하여, 의원·의회직원·방문객 보호, 의회 건물과 경내 경비, 의회 출입통제, 외곽경비, 경내 긴급상황 대처 및 의회 기념행사의 안전한 보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의회경호국장은 왕립 캐나다 기마경찰대 소속이나, 양원 의

장의 지휘를 받음.

상기의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해외 주요국은 공통적으로 의회 경호를 위한 전담조직을 의장의 지휘·감독 하에 두고 있으나, 국가별로 경호·경비체계의 구성, 외곽경비 업무의 자체 수행여부, 인력 충원 방식 및 업무수행절차 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4. 소결

제·개정안은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노출된 국회 경호·경비체계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입법부의 독립적인 경호·경비조직인 국회경위처를 신설함으로써 국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제·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국회의 독자적인 경호·경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① 현행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지휘·관리권 보유, ② 국회사무처 경호기획관실 확대 개편, ③ 국회 자체 경호·경비 조직 신설(제·개정안), ④ 청원경찰 활용, ⑤ 특수경비원 활용 등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 중 어떤 방안이 가장 합리적·효과적인지 검토가 필요함.

제·개정안은 국회경위처 신설을 통해 국회가 자체적인 경호·경비 조직과 체계를 갖추도록 하려는 것으로, 입법부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일원화된 지휘체계를 확보하는 데 효과적인 면이 있음. 반면에, 조직법적 근거 마련 외에 하위법규 정비, 인력 채용, 예산 확보 등 기관 설립에 따른 상당한 후속 조치가 요구되어 단기간에 완료하기 어려운 점도 있음.

[표-4] 독자적인 국회 경호·경비체계 구축방안 비교

구 분	장점	단점
경찰에 대한 지휘권 보유	최소한의 변화를 통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확립 가능	경찰청 소속 유지로 인해 지난 비상계엄 사태 재발 우려
경호기획관실 확대 개편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일원화된 지휘체계 확보 가능	일반직 국가공무원 특성상 물리력 행사를 위한 조직법·작용법적 근거 보완에 한계 존재
경호·경비 조직 신설	일원화된 지휘체계 확보 및 국회경호의 독립성 확보 가능	· 조직법·작용법적 근거 필요 · 기관 설립에 따른 하위법규 정비, 인력 채용, 예산 확보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여 단시간 내 실현 어려움
청원경찰 활용	별도의 입법 불필요 (「청원경찰법」에 따라 가능)	· 청원경찰의 배치, 임용, 운영 등에 있어 경찰의 지속적인 관리·감독 필요 · 많은 국가시설에서 청원경찰을 방호직 공무원 또는 특수경비원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에 부합하지 않음
특수경비원 활용	· 별도의 입법 불필요 (「경비업법」에 따라 가능) · 경비절감 가능	· 특수경비원 교육 및 직무수행에 대한 경찰 감독권이 여전히 존재 · 특수경비원의 신분에 대한 인식부족에 따른 사기저하 및 높은 이직율로 전문성 저하 우려

자료: 박창희, “국회 경호·질서유지 관련 법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15.를 참고하여 작성

참고로, 국회경비체계 개편과 관련한 다수의 제·개정안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18] 동 제·개정안 심사 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제·개정안과 같이 국회경위처를 설립할 경우 기존 경비조직(국회사무처 경호기획관실)과의 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18) 2025년 2월 11일 기준 동 제·개정안 외에 2건의 제정안(「국회 경호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의장 및 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과 26건의 개정안(「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회부된 상황이며, 이들 제·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 파견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회의장의 지휘권 명시, ② 국회경비대, 국회경찰 등 국회경호조직 근거 마련, ③ 파견 경찰공무원의 국회 경호 근거 삭제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제·개정안은 국회경위처의 직무를 국회와 국회의장 등 중요인물에 대한 경호로 규정하고 부칙[19]을 통해 「국회사무처법」을 개정하여 국회사무처의 사무에서 '청사 경비'를 삭제하면서도 「국회법」 제144조[20]의 개정 또는 폐지를 수반하지 않아, 국회경위처가 기존 조직의 업무까지 전담하는 것인지 법문언상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만약 국회 및 주요 요인에 대한 경호·경비를 국회경위처가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 제·개정안의 취지라면, 추가적인 법 정비와 함께 국회사무처 경호기획관실의 업무 이관 및 소속 직원의 승계 여부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마지막으로, 제정안의 발의배경과 취지를 고려할 때 국회경위처는 행정부 소속 군·경의 협조를 제한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소속 공무원이 경호업무 수행 시 경찰공무원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법적 근거가 보완될 필요가 있음.

일례로, 제정안은 소속 공무원이 사법경찰권 행사 및 무기 사용에 관한 근거는 있으나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 수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는 부재하며,[21]

---

19) 「국회경위처법안」 부칙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회사무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청사 관리ㆍ경비 및 후생"을 "청사 관리 및 후생"으로 한다.
※「국회사무처법」 제2조(직무) 국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는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국회 및 국회의원의 입법활동과 국회의 행정업무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20) 「국회법」 제144조(경위와 경찰관) ①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警衛)를 둔다.
② 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경호업무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

21)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제7조(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등을 참고하여 필요한 조문을 추가 보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제정안 제12조는 소속공무원의 무기 사용 근거를 마련하되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를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 않아 권총, 소총 등 무기, 수갑, 경찰봉 등 경찰장구, 분사기 등 경찰장비의 사용 가능 여부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한편, **국회사무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확인된 국회 경호·경비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직, 인력, 예산, 경호·경비의 실효성 확보수단 및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다각적 방안을 검토 중이며,

경찰청은 미국과 같이 입법부 소속으로 국회경찰을 선발·구성하여 국회의 안전 및 질서유지, 국회의장 경호를 전담하는 것이 적절하며, 경찰관 파견의 경우 여전히 인사·예산권 등을 경찰청에서 보유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우려된다는 의견임.

Ⅲ. 조문별 검토

1. 목적 및 지위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제정안 제1조 및 제2조는 동 법률의 목적과 정의 규정을 두고 있음.

[표-5] 제·개정안 조문

개 정 안	제 정 안
제22조의5(국회경위처) ① 국회 중요 인물의 경호, 국회의 회의(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다)의 경호 및 국회청사의 방호·경비를 위하여 국회경위처를 둔다.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회경위처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경위처의 조직 및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위) 국회경위처(이하 “경위처”라 한다)는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둔다.

제정안은 국회경위처의 조직 및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법률의 목적으로 하고, 국회경위처가 국회의장 소속 하에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임.

2. 국회경위처의 직무(안 제3조 및 제9조)

제정안 제3조는 국회경위처의 직무를 국회의 경호·방호·경비, 의장 및 부의장의 경호, 국회 방문 중요 인물의 경호, 국회출입 안전검색 및 관리, 테러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하고, 안 제9조는 직무상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표-6] 제·개정안 조문

개 정 안	제 정 안
제22조의5(국회경위처) ① 국회 중요 인물의 경호, 국회의 회의(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다)의 경호 및 국회청사의 방호·경비를 위하여 국회경위처를 둔다.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회경위처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조(직무) 경위처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국회(의장공관을 포함한다)의 경호, 방호 및 경비 2. 의장 및 부의장의 경호 3. 국회를 방문하는 국내외 중요 인물의 경호 4. 국회 출입의 안전검색 및 관리 5. 테러(사이버테러는 제외한다)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회의 경호에 관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9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처장은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그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정안은 국회경위처가 국회의장을 비롯한 주요 요인에 대한 경호와 국회 경비를 수행하도록 한 것으로, 직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경위처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제정안은 국회에 방문하는 국내외 주요 인물에 대해서도 경호를 할 수 있도록 경호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국내외 요인에 대한 경호는 대통령 경호처[22]와 경찰[23]이 책임지고 있으므로 업무 중복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 간 업무협조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어 보임.[24]

---

2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경호대상) ① 경호처의 경호대상은 다음과 같다.
5.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 원수 또는 행정수반(行政首班)과 그 배우자
6.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

23) 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하여 주요 인사에 대한 경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구적인 대상 등에 대해서는 경찰청 훈령인 「경호규칙」과 내부규정인 「경호업무지침」을 준용하고 있음. 「경호규칙」은 비밀로 분류되어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국내요인 乙호(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대통령 선거후보자, 경호처 경호기간이 종료된 전직대통령과 배우자)와 丙호(그 밖에 경찰청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외빈경호(부총리, 왕족 및 국빈 경호대상이 되는 자의 배우자 단독, 전직대통령, 전직총리, 국제기구·국제회의 주요인사, 그밖에 장관급 이상으로 경찰청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를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인 피습에 따른 경찰 경호의 입법적 쟁점", 이슈와논점 2220호, 2024.)

24) 참고로, 외국의 국가 원수 또는 행정수반 등이 국회에 방문하는 경우 실무적으로 국회 밖 경호는 대통령경호처가 전담하고 국회 경내에서의 경호는 대통령경호처가 직접 하지 않고 국회와의 협조를 통해 진행하고 있음.

3. 국회경위처의 구성(안 제4부터 제8조까지)

제정안 제4조는 국회경위처의 장의 신분을 규정하고 의장의 감독을 받아 경위처의 사무를 통할하도록 하였고, 개정안 제22조의5 및 제정안 제5조·제6조는 처장의 임면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7조 및 제8조는 공무원의 임용과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

[표-7] 제·개정안 조문

개 정 안	제 정 안
제22조의5(국회경위처) ② 국회경위처에 처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 처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회경위처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4조(처장) ① 국회경위처의 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② 처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경위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경위처 관련 사무 중 인사행정·예산회계·국유재산관리·물품관리·비상계획·공직자재산등록 등에 관하여 「국회사무처법」·「국가공무원법」·「국가재정법」·「국유재산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이 국회사무처 또는 국회사무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국회경위처장추천위원회) ① 의장은 「국회법」 제22조의5제3항에 따라 처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미리 국회경위처장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경위처의 직무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하며 추천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국회의원·국회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개 정 안	제 정 안
	③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임명동의 시 첨부서류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처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산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임명동의 요청 대상인 사람은 필요한 경우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공무원의 임용) 경위처의 5급 이상 공무원은 의장이 임면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 처장이 임면한다. 다만, 의장은 국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장에게 그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8조(조직) ① 경위처의 보조기관은 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다만, 소관 업무의 특성상 실장·국장 또는 과장의 명칭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의 명칭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은 이 법을 적용할 때에 실장·국장 또는 과장으로 본다. ② 처장·실장 및 국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그 밑에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처장 밑에 실 또는 국

개 정 안	제 정 안
	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 1개를 둘 수 있다. ③ 실장은 1급 또는 2급, 국장은 2급 또는 3급, 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이나 특정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각각 보하고, 담당관은 2급부터 4급까지 또는 2급 상당부터 4급 상당까지인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3급 이상 일반직 또는 특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는 제외한다) 중 그 소관 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직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④ 경위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실·국·과와 담당관의 설치, 사무분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과와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사무분장은 처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국회경위처장을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의장이 임면하도록 하고, 제정안은 국회경위처장을 정무직(차관급)으로 하며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에 처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할 때 국회경위처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학력·경력·직업 등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함.

또한, 국회경위처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자를 5급 이상은 국회의장으로, 6급 이하는 국회경위처장으로 하였고, 국회의장은 처장에게 임용권 일부[25]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함. 상기의 내용은 다른 국회소속기관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26]과

---

25) 인사관계법령에 따르면, 제정안에 따라 처장에게 위임되는 임용권은 3급 이상 공무원의 파견, 4·5급 공무원의 전직·전보·겸임·파견·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 등임.

※「국회인사규칙」 제5조(임용권의 위임) 법 제32조제4항, 「국회사무처법」 제3조제2항, 「국회도서관법」 제3조제2항, 「국회예산정책처법」 제6조 및 「국회입법조사처법」 제5조에 따라 국회의장(이하 "議長"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3급 이상 공무원의 파견
2. 4·5급 공무원의 전직·전보·겸임·파견·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
3. 전문경력관 가군 및 연구관의 파견·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
4. 5급 이상 공무원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의 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
5. 소속기관 내의 전보와 겸임

26) 「국회사무처법」 제3조(공무원의 임용) ② 5급 이상의 공무원은 의장이 임면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 사무총장이 임면한다. 다만,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장은 사무총장에게 그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국회도서관법」 제3조(공무원의 임용) ① 도서관에 국회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② 5급 이상의 공무원은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임면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 관장이 임면한다. 다만, 의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의 일부를 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관장) ① 관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

② 관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③ 관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도서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도서관사무 중 인사행정·예산회계·국고금관리·국유재산관리·물품관리·비상계획사무·공직자재산등록사무 등에 관하여 「국회사무처법」·「국가공무원법」·「국가재정법」·「국고금 관리법」·「국유재산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국회사무처 또는 국회사무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의2(임명동의 시 첨부서류 등)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관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임명동의 요청 대상인 사람은 필요한 경우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법」 제4조(처장) ①국회예산정책처의 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③처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예산정책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예산정책처 관련사무중 인사행정·예산회계·국유재산관리·물품관리·비상계획·공직자재산등록 등에 관하여 국회사무처법·국가공무원법·「국가재정법」·국유재산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이 국회사무처 또는 국회사무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 ①의장은 국회법 제2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미리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추천위원회는 예산정책처의 직무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하며 추천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국회의원·국회공무원이 아닌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5조의2(임명동의 시 첨부서류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처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임명동의 요청 대상인 사람은 필요한 경우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공무원의 임용) 예산정책처의 5급 이상 공무원은 의장이 임면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 처장이 임면한다. 다만, 의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장에게 그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법」 제4조(처장) ①입법조사처의 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③처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입법조사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입법조사처 관련사무 중 인사행정·예산회계·국유재산관리·물품관리·비상계획·공직자재산등록 등에 관하여 「국회사무처법」·「국가공무원법」·「국가재정법」·「국유재산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이 국회사무처 또는 국회사무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의2(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 ① 의장은 「국회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처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미리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입법조사처의 직무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하며 추천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국회의원·국회공무원이 아닌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의3(임명동의 시 첨부서류 등) ①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처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유사·동일함.

국회경위처의 장의 임면 절차, 국회경위처에 배치하는 공무원의 종류 및 조직 등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으로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볼 것임.

다만, 안 제8조제3항은 실장·국장·과장은 일반직 또는 특정직국가공무원[27]으로, 담당관은 별정직국가공무원[28]으로 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기관의 일반적인 조직법상 입법례와 상이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별정직국가공무원은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나 특정한 업무를 수행을 위해 법령에서 지정한 직종임을 감안하여, 국가기관의 조직에 관한 규정 중 직위에 대한 보임근거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직종(일반직 및 특정직)과 병렬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임.

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임명동의 요청 대상인 사람은 필요한 경우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공무원의 임용) 입법조사처의 5급 이상 공무원은 의장이 임면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 처장이 임면한다. 다만, 의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장에게 그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27)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8)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4. 소속공무원의 사법경찰권 부여(안 제10조)

제정안 제10조는 국회경위처 소속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소관에 속하는 범죄를 인지한 경우 직무상·수사상 긴급을 요하는 한도 내에서 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29]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이 경우 7급 이상 공무원은 사법경찰관으로서, 8급 이하 공무원은 사법경찰리(司法警察吏)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표-8] 제정안 조문

제 정 안
제10조(경위처 소속 공무원의 사법경찰권) ① 경위처의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직무수행 중 인지한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에 대하여 직무상 또는 수사상 긴급히 필요한 범위에서 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7급 이상 소속 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8급 이하 소속 공무원은 사법경찰리(司法警察吏)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정안은 국회경위처 소속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직무 수행 중 인지한 소관 범죄에 대해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의장 등 주요요인에 대한 테러·범죄 가능성 및 국회 내 질서유지를 위반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 특별사법경

29)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와 협력하여 수사하거나 수사를 보조하는 자로서, 경찰청·해양경찰청·검찰청에 소속된 일반사법경찰관리와 삼림·해사·전매·세무·군수사기관 등 특수분야의 수사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로 구분됨. 특별사법경찰은 ① 특수한 업무 영역에 종사하는 행정공무원 등에게 소관 분야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전문지식을 범죄 수사에 활용할 수 있고, ② 시・공간적인 제약으로 일반사법경찰의 접근이 어려운 경우에는 범죄 현장 접근성이 높은 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신속한 범죄 수사를 도모할 수 있는 등의 이유로 1956년에 도입되었음.

찰관리는 긴급체포, 압수·수색·검증, 강제처분 등이 가능[30]하여 범죄 예방과 불법행위자에 대한 실질적인 질서유지가 가능한 점[31]을 고려할 때, 제정안은 국회경위처 소속 공무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국회경위처와 유사하게 경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통령경호처의 경우에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7조[32]에서 소속 경호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다만, 제정안에 따르면 국회경위처가 국회의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

---

30)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제201조(구속)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제200조의3·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다만,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31) 박창희, 「국회 경호·질서유지 관련 법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5.

3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7조(경호공무원의 사법경찰권) ① 경호공무원(처장의 제청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경호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중 인지한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에 대하여 직무상 또는 수사상 긴급을 요하는 한도 내에서 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7급 이상 경호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8급 이하 경호공무원은 사법경찰리(司法警察吏)의 직무를 수행한다.

해서도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특별사법경찰권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수사의 충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수사 전문성 및 수사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5. 소속공무원의 권한 남용 금지 등(안 제11조)

제정안 제11조는 소속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국회경위처에 파견된 경찰공무원 역시 이 법에 규정된 임무만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임.

[표-9] 제정안 조문

제 정 안
제11조(권한 남용 금지 등) ① 경위처의 소속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국회의 질서유지를 수행할 때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위처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임무 외의 경찰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국회경위처의 직무 특성으로 인하여 소속 공무원은 제정안에 따라 사법경찰권이 부여되고 무기 휴대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소속 공무원의 물리력 등 권한 행사가 엄격히 제한될 필요가 있으므로, 제정안의 조치는 적절한 측면이 있음.

또한, 제정안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직무상 의무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33]와 유사한 내용으로, 국회경위처와 대통령 경호처의 직무 유사성 등을 고려할 때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임.

3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직권 남용 금지 등) ① 소속공무원은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호처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임무 외의 경찰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6. 소속공무원의 무기 사용(안 제12조)

제정안 제12조는 직무상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이 무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만, ① 정당방위 및 긴급피난에 해당하거나, ② 직무 수행 중 소관 범죄로 사형·무기·장기 3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자가 소속공무원의 직무집행에 항거·도피하려 하거나, ③ 야간,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호 업무를 방해할 시 이를 방지·체포하기 위해 무기 외에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함.

[표-10] 제정안 조문

제 정 안
제12조(무기의 휴대 및 사용) ① 처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기를 휴대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 사태에 대응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범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1. 「형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2. 이 법에 따른 직무수행 중 인지한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소속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피하려고 할 때 또는 제3자가 그를 도피시키려고 소속 공무원에게 항거할 때에 이를 방지하거나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제 정 안
3. 야간이나 집단을 구성하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로서 직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항거할 때에 이를 방지하거나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제정안은 소속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 사태에 대응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방위 및 긴급피난, 중범죄인이 직무집행에 대해 항거·도피 시 이를 방지·체포하기 위해 무기 외에 다른 수단이 없는 때 등 일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국회경위처의 직무 특성상 업무 수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물리력 행사가 수반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소속공무원이 무기[34]를 최소 침해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문화한 것이라 볼 수 있음.

참고로, 대통령 경호처 직원, 경찰, 군사경찰 등 유사 직종의 경우 법률로써 무기의 휴대·사용을 제한된 요건 하에 허용하고 있음.[35]

34) 제정안은 "무기"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유사 입법례를 고려할 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 소총, 도검 등을 뜻한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무기의 사용) ② 제1항에서 "무기"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도검 등을 말한다.
「경비업법 시행령」 제20조(특수경비원 무기휴대의 절차 등) ⑤법 제1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무기종류는 권총 및 소총으로 한다.

35)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무기의 휴대 및 사용) ① 처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기를 휴대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 사태에 대응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1. 「형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2.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중 인지한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소속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피하려고 할 때 또는 제3자가 그를 도피시키려고 소속공무원에게 항거할 때에 이를 방지하거나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3. 야간이나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호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에게 항거할 경우에 이를 방지하거나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무기의 사용) ①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범인의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1. 「형법」에 규정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행위를 방지하거나 그 행위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나. 체포·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다. 제3자가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
 라. 범인이나 소요를 일으킨 사람이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 물건을 버리라는 명령이나 항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면서 계속 항거할 때
3. 대간첩 작전 수행 과정에서 무장간첩이 항복하라는 경찰관의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할 때
② 제1항에서 "무기"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도검 등을 말한다.
③ 대간첩·대테러 작전 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할 때에는 개인화기(個人火器) 외에 공용화기(共用火器)를 사용할 수 있다.
「관세법」 제267조(무기등의 휴대 및 사용)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에 따른 장비, 장구, 분사기 및 무기(이하 이 조에서 "무기등"이라 한다)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② 세관공무원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에 준하여 무기등을 사용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법」 제20조(무기의 사용) ① 원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무기 사용에 관하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를 준용한다.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14조(무기의 사용) ① 군사경찰은 범인의 체포,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1. 「형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행위를 방지하거나 그 행위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군사경찰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나. 체포·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군사경찰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다. 제3자가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주시키려고 군사경찰에게 항거할 때
 라. 범인이나 소요를 일으킨 사람이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군사경찰로부터 3회 이상 물건을 버리라는 명령이나 항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면서 계속 항거할 때
② 군사경찰은 무기를 사용할 때 무기 사용을 야기한 자와 관계없는 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위의 정황상 무기의 사용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그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군사경찰은 제1항에 따라 무기를 사용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상황을 지체 없이 소속 군사경찰부대의 지휘관에게 보고하고, 소속 군사경찰부대의 지휘관은 그 상급부대의 지휘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경비업법」 제14조(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 ⑧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한도안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된다.
1. 무기 또는 폭발물을 소지하고 국가중요시설에 침입한 자가 특수경비원으로부터 3회 이상 투기(投棄) 또는 투항(投降)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하면서 계속 항거하는 경우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국가중요시설에 침입한 무장간첩이 특수경비원으로부터 투항(投降)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한 때

다만, 제정안은 무기 휴대·사용이 비례의 원칙과 보충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활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무기 사용에 따른 공권력 남용 혹은 과잉대응 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실제로 무기를 사용하는 공무원 개인에 대한 지속적이고 충분한 교육훈련이 이루어져야 하며, 무기 사용과 관련된 관리체계 구축과 예산 확보 등도 전제될 필요가 있음.

7. 벌칙(안 제13조)

제정안 제13조는 이 법상 소속공무원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려는 것임.

[표-11] 제정안 조문

제 정 안
제13조(벌칙) 제11조 또는 제12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정안 제13조는 소속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위법하게 무기를 휴대·사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벌칙의 형량은 기본적으로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 유사 범죄의 법정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적절한 비례성을 지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함.[36]

참고로, 제정안에 따른 벌칙의 법정형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보다는 높은 수준임.

36) 헌법재판소 2018. 12. 27. 선고 2017헌바195 결정

[표-19] 제정안의 벌칙과 유사 입법례 비교

구 분	직권남용	위법한 무기사용 등
국회경위처 공무원 (제정안)	5년 이하 징역·금고, 1천만원 이하 벌금	
대통령경호처 직원 (대통령경호법[37])	(상동)	
경찰 (경찰관 직무집행법[38])	1년 이하 징역·금고, 300만원 이하 벌금	
군사경찰 (군사경찰직무법[39])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형법[40]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 벌금	

37)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21조(벌칙) ① 제9조제1항, 제18조 또는 제19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8)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2조(벌칙)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9)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① 이 법에 규정된 군사경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군사경찰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0)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위임규정(안 제14조)

제정안 제14조는 이 법에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정하도록 함.

[표-12] 제정안 조문

제 정 안
제14조(위임규정) 이 법에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정한다.

제정안은 이 법에서 위임하거나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법률에 포괄적인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다른 국회소속기관의 입법례[41] 등을 참고할 때 필요한 조치로 보임.

41) 「국회사무처법」 제14조(위임규정) 「국가공무원법」과 이 법에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同意)를 얻어 정한다.
「국회도서관법」 제12조(위임규정) 이 법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정한다.
「국회예산정책처법」 제11조(위임규정) 이 법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정한다.
「국회입법조사처법」 제10조(위임규정) 이 법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정한다.

9. 부칙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법을 시행하도록 하고, 「국회사무처법」을 개정하여 사무처의 직무에서 '청사 경비'를 제외함.

[표-13] 제정안 조문

제 정 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회사무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청사 관리ㆍ경비 및 후생"을 "청사 관리 및 후생"으로 한다.

제정안은 국회경위처라는 신규 기관을 설립·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기관 설립에 필요한 시간을 6개월으로 전제하고 있으나, 시행일에 앞서 기관 설립을 위해 일정한 준비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근거도 함께 부칙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부칙 상 다른 법률의 개정을 통해 국회경위처장에게 다른 국회소속기관의 장과 같이 국회사무처 또는 국회사무총장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국회사무처법」제12조[42]를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015

42) 「국회사무처법」 제12조(권한의 위임)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사무처 또는 사무총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도서관ㆍ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예산정책처장 또는 국회입법조사처ㆍ국회입법조사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